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봉수 의원)

의안 번호	15-98
----------	-------

발의년월일 : 2015. 10. 16.

발 의 자 : 이봉수·강희향·김윤정·
문정애·백남환·이동주·
이필레·이학래·차재홍
의원(9명)

1. 제안 이유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골자

-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하여 현장점검, 품질관리, 부실공사 측정 및 부실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안 제4조)
- 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은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자는 주요 구조부 공사시 사전 통보하여야 함(안 제5조, 제6조)
- 라. 구청장은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를 감사담당관에 설치하고, 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안 제7조)
- 마.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 대상 및 방법, 신고의 처리, 부실공사 측정 및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11조)

3.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49조, 제53조~제55조, 「건축법」 제2조

4.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5.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5.10.19. ~ 10.23. (제출된 의견 없음)

나. 조례안 : 불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도 포함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점검) 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구청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공사 측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